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10 회 임 시 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5. 3.

고 명 욱 의원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고 명 욱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8조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안 별표 5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 규정 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시간 외의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,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고명욱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013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고명욱, 도하석, 박정환,
남현주, 강한곤, 정순옥,
황국주, 서보영

1. 제안이유

-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달서구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8조)
-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(안 별표 5)
 - 배우자 출산 시: 10일 → 20일
 -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: 15일→25일

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, 별표 1

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사생활 보장) ① 구청장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근무 시간 외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무분별한 연락, 업무지시 등으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난발생·긴급상황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구청장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별표 5 출산의 일수란 중 “10일”을 “20일”로 하고, “15일”을 “25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8조(사생활 보장) ① 구청장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무분별한 연락, 업무지시 등으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난발생·긴급상황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② 구청장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8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19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</u></p>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③ ~ ⑭ 생략
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 <개정 2025. 2. 11.>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